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 대통령령 제 13,672 호 주차장법시행령중 개정령

◇ 駐車場法施行令 改正理由

駐車場法이 改正(1991. 12. 14, 法律 第 4437 號)됨에 따라 同法에서 委任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現行規定의 施行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駐車場用建築物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의 70퍼센트~95퍼센트 이상을 駐車場으로 확보하도록 함(令 第 1條의 2)

나. 駐車場用建築物의 容積率을 1千300퍼센트이하에서 1千500퍼센트이하로 緩和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隣接道路의 폭에 따라 建築物의 各部分에서 道路의 반대쪽 境界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8배~3배이하가 되도록 하여 建築法上의 높이제한 規定을 緩和함(令 第 2條 第 2項).

다. 宅地開發事業등의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路外駐車場의 규모를 정하고, 都市鐵道建設事業과 市街地造成事業을 團地造成事業등에 포함시켜 일정규모이상의 路外駐車場을 확보하도록 함(令 第 4條).

〈법제처 제공〉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조의 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법 제 2조 제 5호의 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다음에서 정한 비율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자동차관련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 : 90퍼센트
2.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주차전용건축물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80퍼센트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0퍼센트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기계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의 연면적의 산정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관리사무소등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 2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로 하되,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대지가 폭 12미터만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frac{36}{\text{도로의 폭}}$ 배. 다만,

비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 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의 2(주차장정비계획의 수립 보고) 법 제 4조 제 7항 및 제 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주차장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계획연도 개시 3월전까지 보고하되, 인구 30만이상시의 시장은 교통부장관에게, 그외의 시의 시장 및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 3조 제 2호를 삭제한다.

제 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조의 2(노상주차장에서 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 8조의 2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 2조 제 16호의 긴급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등) ①법 제 12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시기지조성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아파트지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공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한다.

2. 사업의 규모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 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모로 한다.

②법 제 12조의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도시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frac{\text{도시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times \frac{\text{도시철도연장(km)}}{8}$$

$$\times \text{도시철도연장(km)}$$

8

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 5조 제 1항 본문중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9조중 “건설부령”을 “부령”으로 한다.

제 13조의 제목 (“점용료의 감면”)을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 2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 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 14조 제 1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하고, 동조 제 2호 및 제 3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 16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 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조의 2(의견진술의 절차)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제 2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절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 17조제 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 18조중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관광지·휴양지·유원지”를 “관광지·휴양지·유원지등 일반다수인이 이용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 19조 제 1항·제 2항 본문 및 제 3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제 2항 본문중 “하는 때에는”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

며, 동조에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비고 제 2호 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로 하고, 비고 제 9호 중 “건축법시행령 제 53조 제 2항”을 “건축법시행령 제 89조 제 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 13066호 부칙 제 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의 용도변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 신청권 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시철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승인등을 신청한 도시철도건설사업 기타 단지조성사업등의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 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점용료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외의 자가 주차장정비지구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 13조 제 2항 제 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교통부령 제 984 호

◎ 건설부령 제 513 호

◇ 개정이유

일반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조명기준을 높이고, 대형판매시설등의 주차장안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등의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소형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일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노외주차장에 인접한 도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인접한 도로가 일방통행로 이거나 주차장 출입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의 너비가 4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주차

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제 5조 제 5호).

나.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는 최하 20룩스에서 최고 50룩스이상 조명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중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의 노외주차장 및 대형판매시설·숙박시설등의 부설주차장은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명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제 6조 제 1항 제 8호·제 10호 및 제 11조 제 2항).

다. 주차대수 100대미만인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면도 및 토지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설치신고 절차를 간소화함(제 7조 제 1항).

〈건설부 제공〉